

호남대학교(이하 “대학”라 한다)와 에어서울(주)(이하 “에어서울”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이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대학과 에어서울이 항공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‘항공산업인력’은 에어서울의 캐빈서비스직을 말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대학과 에어서울은 아래 항목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① 대학은 산업체의 학술적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한다.
- ② 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서비스인력을 지원한다.
- ③ 산업체는 교육 및 실습을 통해 훈련된 우수 학생 채용에 적극 협력한다.

제4조(실무협약) 실무협약은 본 협약서 체결 후 분야별 실무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5조(협약의 공개 및 활용) 협약 당사자는 체결 내용 및 산학 협력 과정에서 습득한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 공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, 반드시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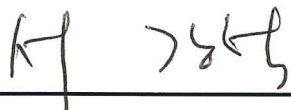
제6조(협약의 변경)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해당사실을 사전 60일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 후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한다.

제7조(협약의 효력 및 해지)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,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당사자 일방은 해지일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7년 6월 15일

호남대학교
총장 서강석



에어서울(주)
대표이사 류광희

